

財閥땅 「업무용 위장」 소문이 사실로 판명

자진신고한 제삼자명의부동산중 비업무용규모 (단위: 첨평·연평)

그 룹	제 삼 자 명 의		비 업 무 용		비 업 무 용	
	부 동 산	부 동 산	부 동 산	부 동 산	(%)	금 액
三 重	494	51	125	23	25.3	45.1
那 良	134	44	73	28	54.5	63.6
鹿 児 島 市 民 公 團	40	20	6	2	15.0	10.0
大 輔	18	7	17.7	7	98.3	100
進	179	577	8	185	49.2	32.0
計	865	699	309.7	245	35.8	35.1



企業투기감독기관서도와준셈

【非업무용】 現代 南陽灣 매립지 업무용 빨표 쓰면 충이

金會平
기자

5大그룹 非業務用 18.2%로 바뀐 안팎

제 193회 총회에서 대법관
이미수(李美秀)는 「부
국군」이 유통되는 바에
대해 법원에 제소한 바
는 7월 12일까지 대법관
이 판결을 내렸다. 대법관
은 「부국군」이 유통되는
방법 東代의 南陽郡에 놓여
있던 관찰원이 10여 군에 걸쳐
판매를 허락하고 판매액이

卷八

등 5개 그룹이 모 기준으로 접체한 비업무용부동 산비율 2.0%에 비해 9.8%가 높아 국세청 조사에 부합하는 결과로 판정되었다.

고 면적으로도 은행감독원이 벌 표했던 1백61만평의 10배가 넘는다는 점에서 그동안 정부당국이 발표한 수치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비율이 이처럼 높은 적자를 보이는 것은 은행 감독원이 기업들의 신고내용만 믿고 기업 사유·부동산에 대해 조사도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한국 청년들은 미련무용으로
국제적인 청년 협회에 드러났다.
한국 청년들은 미련무용으로
국제적인 청년 협회에 드러났다.
한국 청년들은 미련무용으로
국제적인 청년 협회에 드러났다.

물론은 해수부원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관성기준이 최근
에는 주체 정부 같아졌다고 주장하
고 있고 있거나 하는 한편으로 여전
히 관리부정상 비업무용 판정기준
을 두루나 하술했다는 것을 말
하고 있다.
이번 소지건만으로도 은행
부동산원은 형식적으로 예산규제
를 하면서 재민족화의 부동산기

古文書考證

한·진 그룹으로 5백46만2천평

20

348 8

5대재벌 비업무용 부동산 18.2%...무

제주도민 49.8%는 차지했다.
제주도의 제동물장이 비
업무용으로 판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성은 13.8%에 해당
하는 115만7천평을 소유, 면
적 기준으로는 4번 째이지만 행
정부는 1천5백60억 원으로 무려
47.3%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삼성은 향후에 소유한
제주도의 제동물장 등의 가격이
비례적 차별성을 금지하
기 때문에 비업무용 부동산은 전통
적으로 갖고 있음을 밝혀줍니다.

디우리 삼성은 총 면적 1만평을
기준으로 하다면 민족이나 금액
면적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면적은 억의도(80억~90억평)로
37배에 해당하는 3천여만
평에 이릅니다. 이는 나이지 4대
부동산과 맞먹는
세계적인 부동산입니다.
국제정상 당초 이날만 49개
국내 기업과 함께 대한 조선사찰파는
한국에 청난 차모이다.

민족의 이념

5대 재벌 가운데 가장 많은 보유한

卷之三

한 관계자도 “일부 언론에 발표된 대로 했기 때문에 정부는 청탁금지법을 문제로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의 배경에는 그동안 체계가 개속화 주장을 해온 불법부동산 판정기준의 일부 대변해 주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도 있다. 국제적이나 세계적 차이 비업무용 편경기준상 문제가 있다고 일컬고 있는 사례들이 대부분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일부 첨예한 문제로 제기되는 경우는 심증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아니거나

312521 90.6.26

“서울시, 87년 대통령선거 때 구청장·통장 거액 지급 확인”

20억원 상당 이감사관 주장 신빙성 높아져

1990. 6. 26
이해찬 의원 폭로

지난 87년 대통령선거 당시 서울시가 산하 17개 구청장들에게 12억원, 통장들에게 8억3천7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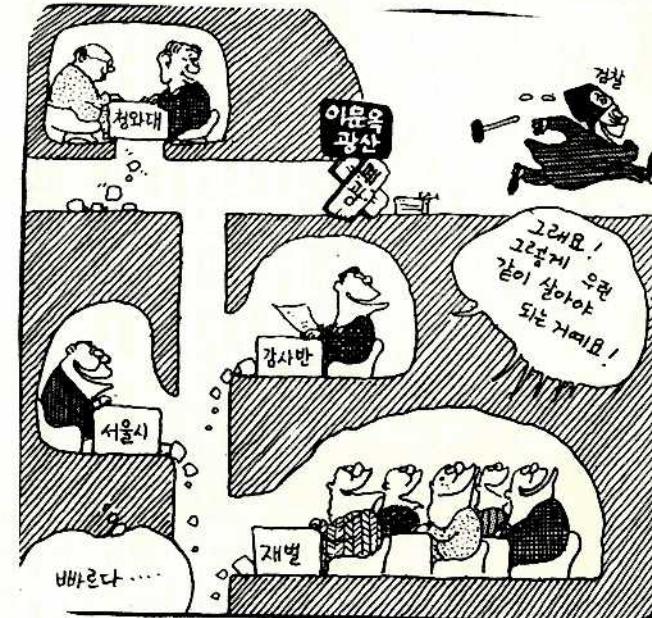
이해찬 의원(평민)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고 “이로 뿐만 아니라 구속된 이문우 감사관이 밝

힌 ‘서울시 예산 88억원의 선거 자금 변태지출’은 매우 신빙성이 높으므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87년 11월28일 ‘환경정화사업비’ 28억원 중 12억원을 ‘원동기 저소득시민 생계보호’ 명목으로 전용, 시내 17개 구청장들에게 5천만~1억원씩 지급했다는 것이다. 환경정화사업 예산은 86, 88년에

고 지적하고 “침찰은 서울시 복제사를 조사한 뒤 그것이 적법한 지출이었나고 결론지었나”고 물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사실에 대한 증거로 서울시의 87, 88년 예산서와 87년 결산서 사본을 공개했다.

한겨레
90. 6. 26



6. 검찰 수사결과 발표

#수사결과 발표 내용

#수사결과 발표 안팎

李文玉씨 수사종결起訴

大檢 8 가지 주장 사실아니다."

중앙
90.5.26

대검중앙수사부(金明夫검)	감사원사무총장이
검찰은 25일	감사원보고서를 언급기
관에 유출시킨 혐의로	관에 유출시킨 혐의로
속된 감사원감사관 손爻호	속된 감사원감사관 손爻호
(50)가 범의 구속한	(50)가 범의 구속한
부신 실리과정에서 주장을	부신 실리과정에서 주장을
서울시 예산 88억 원의	서울시 예산 88억 원의
자금 전용을 8 가지 내용	자금 전용을 8 가지 내용
의 사실여부를 확정조사한	의 사실여부를 확정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
러났다고 밝혔다.	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사건	검찰은 이에 따라 이 사건
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이날 오후 손爻호를 끌고 상	이날 오후 손爻호를 끌고 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
했다.	했다.

검찰은 그동안

당신

검찰은

진실구명보다 공소유지 초점

이 감사관 검찰조사 의혹 불러

이문을 감사관의 법정진술내용에 대한 검찰의 사실조사 발표는 그 신뢰도에 상당한 의문을 던져 주고 있다. 검찰은 이 조사와 관계없이 감사원 전 사무총장 안경상씨 등 전·현직 감사원 간부, 서울시 간부 등을 분석 조사하고 이 감사관의 진술과 일부 부분은 직접 대처실문을 벌였다고 밝히 조사결과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의문점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

우선 80년 부정축자 환수재산 처리에 관한 의혹이다. 당초 이 감사관은 89년 2월 환수재산 중 21억원이 균기가 없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으나 나중에 국정감사에서는 평가자체가 난 것으로 어물쩍 넘어갔고 전술했었다. 그러나 검찰발표는 감사원이 당

시 국방부에 경질조사부 보고하도록 조치했고, 1년이 지난 지난 2월 23일 국방부의 조사보고부에 위 하여 이 금액은 환수대상자의 가족 등에게 5억2천여만원을 반환하는 등 위법처리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 감사관의 진술과 검찰의 발표는 차이가 나타난다. 이 감사관은 21억원이 증발됐는데도 감사원이 국방부를 감사하지 못하고 평가자체로 처리했다는 데 있다. 검찰의 반포대로 국방부가 1년이 지난 다음에 감사원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했다면 그 결과를 누가 믿겠는가. 문제는 감사원이 국방부의 처리결과를 직접 감사하지 못하고 국방부에 이를 위임한 데 있으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려면 국방부의 처리결과가 과연 사실인 전현수, 판부세계로 미환수원 액수가 14억원 평가자체 2억3천만원으로 있어 21억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선경그룹에 대한 법인세에도 의혹이 있다. 이 선경그룹의 법인세 12억원을 징수한 것을 밝혀내고도 최종회 회장이 노태우 사돈관계라는 이유로 않았다고 전술했었다. 본래 감사 당시 이 문건을 으나 법원과 법인세법과 세제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밝혔다. 이에 대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같은 은행으로부터 대금은 자체회사인 SKI(선경 인 등에 86~88 사업연도

부정축재 재산환수 국방부 차액해명 신빙성 의문
선경그룹의 법인세 비과세 판정 정실개입 가능성
현대그룹 과세보류 ‘물타기’ 불로소득 제재했어야
시예산 선거에전용 ‘주요사업비’급증 국회도 지적

한국어
90.5

-26

65억원을 대여금으로 지급했다. 은행대출금을 다른 회사에 대하여 할 때에는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법인세법은 당초 은행대출을 받은 (주)선경에 대해 은행이자금 손비로 처리하도록 인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주)선경은 이중 일부를 자회사에 대하여 해주었으므로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손비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 금액이 23억원이고 이에 대한 법인세가 12억원이다.

그러나 국제청은 SKI가 (주)선경의 자회사이지만 대내·상품수출과 창구이기 때문에 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회사로 간주하고 세제하지 않았다. 국제청의 입장은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특히 여기에는 선경이 노태우 대통령의 인척 회사라는 '정설'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

현대그룹의 자본거래학적 2천5백억원에 대한 과세 보류도 의심을 받을 만하다. 재벌그룹의 이른바 '무더기' 종자로 인한 불로소득은 여론의 지탄을 받아왔으며 비단 현대그룹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다. 그러나 국제청은 이를 대안과제여부는 법적 해석상 한반양론이 있다는 이유로 저평가 세제를 마련했다. 현대그룹은 88년 11월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을 으나 감사원은 지금까지 1년6개 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감사원의 지적이었다. 풍성 자본거래로 인한 물로소득과세는 1천억원대 감사관과 당시 서울시 간부를 내정신문한 걸과 이 간부가 이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에 예산·정정보비, 관광비, 보상금이 서울시 내부에서는 주요사업비로 부류에 속할 때 갑자기 높아나면서 선거와 관련된 선심사업에 쓰인다는 사실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검찰이 이 사건을 대해서는 태도는 애초부터 소극적이었다. 검찰은 진술내용이 수사할 반한 사항이 되지 못한다는면서 '공소유지권을 위한 사실증명'이라고 그 성격을 몽박았다.

또 최근 서구를 '정당 조치화' 시 않고 갑자연 관계자 등을 불러 진술반 들음으로써 이 감사관의 진술내용을 무장하는 대 초점이 되워졌다며 의혹을 면할 수 없다. 검찰수사 결과 백과내용은 감사원이 이날 낮 9시에 각 원군사에 배포한 해양사고의 내용과 일치하는 대지도 드러났다. 검찰은 또 당초부터 감사원이 자체처리하지 않고 전화로 이 감사관을 넘기는 바람에 입장을 확장할 수 있다는 분분한 티를 냈던 것이다.

검찰은 일단 조사를 끝으로 세 번이나만 부사장에서 빛나거나 나온 것은 했지만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검찰조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반등·전상권을 거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기록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응이란다.

하는 데까지 나이가야 한다. 예로 국방부가 보고한 내용도 족에게 되돌려준 액수가 5억2천원, 흰수재산의 소재불명으로 미현수된 액수가 14억3천원인 차액은 2억3천원으로 되어 21억원은 여전히 의문으로 있다.

선경그룹에 대한 법인세 처리도 의혹이 있다. 이 감사관은 선경그룹의 법인세 12억원이 누락된 것을 밝혀내고도 이 그룹의 광장회 회장이 노태우 대통령과 판관단체는 이유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었다. 반면 검찰은 당시 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검토결과 법·법인세법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밝혔다. 이에 대한 사설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시 정경유착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회사인 SKT(선경 인터스터리) 2002-09-19~2003-09-19이었다.

1990. 05. 26
이월 만큼 액수가 많아 국세청이 재벌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를 미루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또한 언론에서도 수차례 지적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금까지 처리하지 못한 문제를 시인하고 빠른 시일 안에 양단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 예산 88억원을 선서자금으로 낸태 지출했다는 이 감사관의 진술은 사실일 가능성성이 높다. 검찰은 이 감사관이 감사 당시 정보비 7억원, 관광비 29억원, 보상금 52억원의 지출내용을 조사하자고 했으나 수석감사관이 서울시에 확인해온 결과 정보비와 관광비는 감사대상이 아니어서 보상금만 감사한 결과 등판장의 떡값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직법했다고 밝혔다. 김창은 또 이 감사관이 서울시 간부로부터 이 자금이 선기자금이라는 설명을 들었었다는 부분과 같은 이

경찰종립의지퇴색

… 대간
… 문수부가 족족
… 前사관(50) 구속
… 기간 연장 허용안 25일
…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해 고전적 기수해 “파문이 계속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조”라는 외호를 사고 있다.

… 대검은 “씨씨가 구속적 부심에서 8 가지 비리혐의에 휘둘려온 직후 이를 간에 경찰·검찰 국세청이 모두 18명을 소환·조사를 벌였으나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 진화동에 확장됐다는 것이다.”

… 경찰청 내에서는 대검이 이처럼 “증거나 사례의 폭로발언에 전국 수사의지를 를 보이지 않아 대단히 불편한 듯한 표정으로 애매모호한 답변의 면모로 “아니다”답변을 금기여 전향총장의 평소 불안이 희석해 가는 것을 다 알고 풍물.”

… 내부간부들은 최근 “경찰대통령과 정부의 활동과 관련, 축하상으로 도前現職市道자사 3명이 관찰기자로 지분을 넘겨 6월초 道臣(道臣)으로서 6월초 道臣(道臣)으로서 나들지 혹시 있을지 모를 연예송진이 사에 대한 기대로 물론 모습.”

李前감사관 전격起訴 “파문 조기鎮火” 의혹



〈그림:柳基淑〉

주자보호법제를 거듭 밝혔으나 5월에는 도시개발 공사가 적발된 1688㎡ 대진구역을 요구하는 뒤 둑지 척도장을 보면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입주자들이 크게 술렁이자

경찰, 崇實大기물파손 학생들에 책임전가해 비축

『한국의 고무 산업』 10월
호에 실린 「최고장관 면회」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해도 되는 나쁜 헌법
개정안을 맹비난하고
개정안을 맹비난하고
로 開公을 맹비난한
회였다는 소식을 들을
『기록해온 옛날과 새』에
하면서도 「국제화를」
하여 그런 식으로 헌법
해 분석이 진짜로 차
법 전대·전지사의 맹비난
법제주지 않았다』며
포.

세계일보
90.5.29

90.5.29

이문옥 감사관의 법정진술은 우리 사회 권력의 깊은 곳에서 이루어진 무정이 풍기로된 것으로서 국민들의 현 청와대에 대한 불신을 기증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 청부가 대기업의 부동산투기를 뿐리 않고, 공적사회의 기장을 바로 잡겠라고 청와대에 시정들을 일으키고 있는 페여서 이걸은 폭로 내용의 영향은 매우 충격적이다. 그 중에서 지난 87년 대통령 청와대와 8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서울시가 시 예산에서 차금으로 청보원을 정보비 명목으로 지출하여 선거자금으로 활용하였다는 사실, 부동산투기·탈세 등과 관련하여 대기업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면서 청와대에 대한 감력을 놓아 감사관은 중단된 사실 등을 현 정부에 의하여 이미 청산되었다고 공언된 5공비리의 재판이라고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 감사관의 진술내용에 대한 검찰은 국회 형식적이다. 검찰은 지난 25일 이문옥 감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구속기소하면서 그의 법적 전술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이러한 진술의 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찰이 관계자를 소환한다고 하여 흑시나하고 기대하였다가 한 번 실망하였다. 검찰이 보고, 역시나하고 또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철도이다. 첫째, 이 감사관의 진술은 평소 대기업

에 대한 파악감사를 하여 물의를 빚은 이 감사관이 승진에 있어 수차례에 걸쳐 탈락된 뒤 이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구속파'의 자리를 빼앗았던 '청와대'의 청부인은 '구속파'의 자리를 빼앗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것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감사 때 이 문제에 관하여 철저하게 조사된 바 없으며, 예산처용이 충분으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리가 검찰에 의해 전에 입학하였다는 것을 아니고, 한편 상의 조사될 성질의 것도 아니고, 청와대의 재벌족 수적인 기관인 감사원이 청와대의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문옥 감사관 진술과 검찰의 '변명'



이 감사관의 진술내용은 현 정부의 청정과 도덕성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나이가 6공비리에 대한 청산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리가 검찰에 의해 전에 입학하였다는 것을 아니고, 한편 상의 조사될 성질의 것도 아니고, 청와대의 재벌족 수적인 기관인 감사원이 청와대의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변호사〉

한겨레 90. 5. 29

법원 판례의 입장에서 사원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청부를 위하여도 정치적 안정을 이루할 수 있다. 전두환 정권이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과 고 박종철 열사 고문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진상을 규명하지 아니하고 '성을 혁명의 도구로 삼는다' '탁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변호사〉

법원 판례의 입장에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혹은 명백하게 조사를 마친 까닭은 무엇인가? 성이라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것일까? 당초 김천은 이 감사관의 구속 이유가 된 제벌의 비임무용 부동산 실태 '누설'이 허위라고 발표하면서 그가 무슨 재주로 8일 만에 제벌의 방대한 비임무용 부동산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국민대중이 김천에 되물음을 차례이다. 김천은 무슨 재주로 단 하룻밤에 서울시 예산 집행의 의혹에서부터 선경그룹과 삼성생명보험 등의 범인세 누락에 이르기까지 조사를 마칠 수 있었는가?

더구나 김천이 물려 조사를 빌었다는 '참고인들'은 대부분이 의혹의 대상이 되어 있는 담당부서의 공무원이나 회사 직원들 또는 감사원의 감사관들이 있다. 김천이 이 감사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그가 폭로한 비리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면 국민들이 남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김천은 진실을 밝히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에 형식적으로 몇 사람을 불러 조사하고서는 이 감사관의 모든 진술은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느 국민이 그 발표를 믿겠는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는 달리 이문옥 감사관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87년 11월 23일, 대통령선거를 2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주요사업비'란 이름으로 49억원 가량의 자금을 긴급조성한 예산문서가 보도되었는가 하면 삼성그룹의 중앙개발이 보유한 안양팔프장이 비임무용 토지로 뒤늦게 판정되어 범인세 등이 부과된 사실이 세로이 알려졌으며 현대그룹이 회사 합병 때 얻은 거래차익의 역시 진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천은 이 모든 비리에 관한 진실을 밝혀낼 자격도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청와대 특별사정반이 조사를 받아야 할까? 그러나 이 감사관이 폭로한 감사증단 명령은 바로 청와대에서 나온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이 주장하듯 국회 법사위에 이 문제를 넘길 것인가? 민주당이 지배하는 국회의 법사위가 성의있는 작업을 하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 감사관이 폭로한 내용은 '5공'의 비리가 아니라 바로 6공의 비리이다. 그것은 현 정권의 부도덕성과 부정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우리는 5공비리를 밝히기 위해 통상적 수사기관이 아니라 철대로 독립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특별검찰부나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주장한 바 있다. 이제야 말로 비상한 재도들을 도입하고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시점이다. 정부가 이런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감사관의 폭로를 덮어두는데 규규한다면 정부의 신뢰는 완전히 땅에 떨어질 것이다.

한겨레 90. 5. 30

이감사관 보고서 변조 가능성

이문옥씨, 변호인단에 밝혀 “검찰제시 자료 원본과 달라”

이문옥 감사관이 감사원에 제직할 때 만들었던 재벌그룹 소유기업부용 부동산실태 감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자료들이 그후에 변조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구속된 이문옥 감사관이 지난 25일 오후 평민당 변호인단 소속 홍명기·조승형 의원과의 구치소 접견을 통해 진술함으로써 뒤늦게 알려졌다.

이 감사관은 이날 “지난 24일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검찰이 보석준 선경그룹 관련 증언보고서가 자신이 작성했던 원본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89년 8월 삼성그룹 등 재벌기업에 대한 감사를 본창 진행하고 있을 때 감사원

사무총장이 갑자기 감사증단 지시를 내려 이 사실을 자료에 남길 목적으로 사인펜으로 ‘총장지시’라고 써 놓았는데 이같은 표시가 사리져버린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흥 의원 등이 전했다.

이 감사관은 이밖에 연소자에 차산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탈세하는 사례를 규명키 위해 삼성생명의 경우는 보험관계를, 대우그룹의 경우는 증권관계를 조사했으나 감사원 사무차장만 결재하고 사무총장은 결재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 감사를 중단했다고 진술했다.

한겨레 90.5.31



7. 이문옥 감사관 석방을 위한 결의대회

#사회단체, 야당 석방촉구대회 관련 기사

야권, 이문옥 감사관 석방 촉구 국회서 진상규명 추진

야권은 16일 이문옥 감사관의 구속사건과 관련하여 일제히 논평을 발표, 이씨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정대철 국회 문공위원장은 이날 “국민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 대재벌들의 부동산 투기 등에 관한 정보는 마땅히 국민앞에 공개되어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진정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코자 한다면 스스로 대재벌 소유 부동산의 실상을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 공개해야 할 수도 이씨만을 일방적으로 정보 누설죄를 적용해 구속한 것은 명백히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회 문공위를 소집, 진상규명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태식 평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문옥 감사관의

구속은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정부 태도의 허구성을 여실히 증명한 사건”이라며 이씨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장석화 민주당(가칭)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사건은 소신껏 복무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일대 협박”이라며 “이른바 특명사정반까지 만들어 공직자·재벌의 비리를 척결하겠다던 정부의 이중성을 드러

한겨레 90.5.17

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재오 민연추 대변인은 “이 사건은 국민들의 알 권리조차 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자당 일당독재 분쇄와 민주 기본권 쟁취 국민연합’은 “이 사건의 구속은 현 정권이 부동산 투기를 막을 의사도, 능력도 음을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전민련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정부가 재벌의 비리를 규제하기 위해 양심적인 공무원을 구속시킨 이번 사건은 박종철 고문차사 사건과 비견되는 것으로 정경유착의 실상과 정부 사업부의 도덕성을 현저히 실추시키는 것”이라면서 스이 감사관의 석방,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 유실태 전면 공개 등을 촉구했다.

이 감사관 석방촉구 시민대회 경실련, 재벌땅 공개 요구

파고다공원 3백명 모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공동대표 변형운 교수 등 4명)은 19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파고다공원에서 시민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재벌 토지투기 은폐 기도 규탄 및 이문옥 감사관 석방촉구 시민대회’를 열고 스이 감사관 석방, 재벌의 부동산 보유 실태의 전면 공개 등을 촉구했다.

집회가 열리는 도중 주말을 맞아 파고다공원에 온 시민 1백여 명이 집회를 지켜보면서 박수를 치거나 함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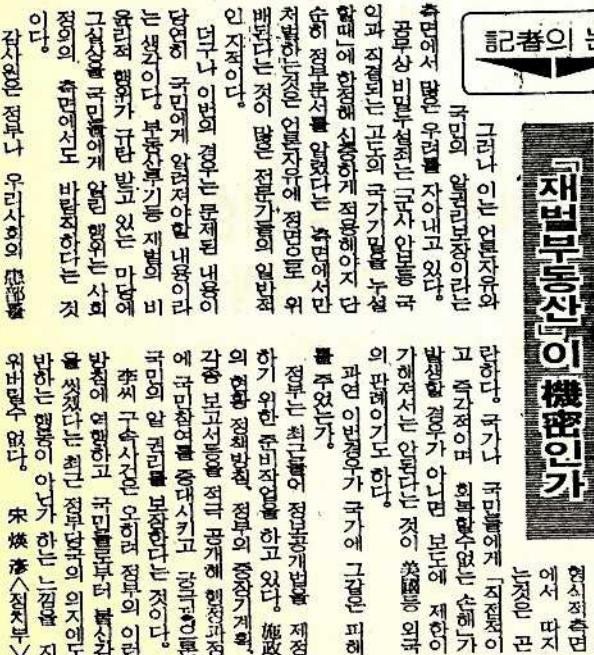
집회를 마친 뒤 시민 1백여명은 파고다공원에서 롯데백화점 앞까지 “투기재벌 비호하는 정부는 작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2km가량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에 앞서 경실련은 지난 17일 서울시경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해 이날 거리행진을 경찰이 지지하지는 않았다.

경실련은 이날 집회에서 “이번 사건은 재벌 땅투기를 봉쇄하겠다는 정부의지가 대국민 무마용 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한 집권세력이 재벌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실로 입증한 또하나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한겨레

90. 5. 20



동아 90. 5. 17

이감사관 석방 서명운동 전민련 대한변협 정부에 공개 진상규명 촉구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과고다공원앞에서 '이문옥 감사관 석방촉구 시민서명운동'을 벌였다.

전민련은 시민들에게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이 감사관의 구속은 현정권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재벌들의 이익만을 감싸고 도는 부정·부패한 정권임을 분명히 드러냈다”며 △이감사관 석방△재벌 토지보유실태에 대한 전면공개 등을 촉구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승서)는 이날 이문옥 감사관 사건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 "정부는 이씨가 법정에서 밝힌 감사원과 행정기관의 비리 사실에 대해 관계기관의 해명이나 수사 또는 조사의 이름을 빌려 사실을 호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부의 수사력과 국정감시·조사 기능을 망라해 공개리에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 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 감사관의 즉각 석방과 명예회복 등

한국서 90.5.21

여야, 감사비리 규명 이견

여야는 25일 국회에서 총무회
담을 열어 임시국회 소집문제와
이문옥 감사관의 감사비리 폭로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처리방
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양쪽의 의
견이 맞서 결렬됐다.

“이문옥 감사관 석별”

청와대 회담때 요구”

김대중 평민총재

김대중 평민당 총재는 25일 이문옥 감사관 문제와 관련, 오는

29일 청와대회담에서 노태우 대통령에게 이 감사관의 즉각석방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내달 2일 시민대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 '이문옥 감사관 석방과 정경유착 규명촉구 시민대회 및 양심의 행진'을 오는 6월2일 서울 괜고디공원과 대구 YMCA 강당에서 동시에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90. 5. 2

한국의 대표적인 학자로, KNU 교수로 활동하면서 정치학과 국제관계학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그는 1980년대 초반에 대선 후보로 출마하였고, 1988년에는 노무현 후보를 지원하는 운동을 주도하였다. 그의 저작으로는 『한국 정치학』(KNU), 『한국 정치학』(KNU), 『한국 정치학』(KNU) 등이 있다.

동아 90.5.26

한겨레신문

이감사관 석방 시민서명운동

전민련 재벌 토지보유 실태 공개 촉구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파고다공원앞에서 '이문옥 감사관 석방촉구 시민서명운동'을 벌였다. 이에 회복 등을 촉구했다.

전민련은 시민들에게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이 감사관의 구속은 현정권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재벌들의 이익만을 감싸고 도는 부정·부패한 정권임을 분명히 드러냈다"며 △이감사관 석방△재벌 토지보유실태에 대한 전면공개 등을 촉구했다.

심야영업 단속을 나온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기각된 카페 주인에 대해 경찰이 11일 만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 신정경찰서는 26일 서울 양천구 목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승서)는 26일 이문우 감사관 사건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 "정부는 이씨가 법정에서 밝힌 감사원과 행정기관의 비리 사실에 대해 관계기관의 해명이나 수사 또는 조사의 이름을 빌려 사실을 호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부의 수사력과 국정감사·조사 기능을 망라해 공개리에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 감사관의 즉각 석방과 명만인 이날 정씨가 유흥접객업소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9일까지 술 등을

필았다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우
반혐의를 뒤늦게 추가 적용해 구
속영장을 발부받아 보복성 구속
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겨레 90.5.29

‘감사원 비리’ 국조권 요구

야권 대회 “이문옥씨 석방·진상규명을”

‘감사원 이문옥 감사관 구속 진상규명 및 석방촉구대회’가 7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2층 강당에서 평민당·민주당(가칭) 및 국민연합 주최로 시민 등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공동 결의문을 채택, “정당한 양심에 입각해 행동한 이 감사관을 구속한 것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재벌위주 경제정책의 허상을 감추려는 의도이며 동시에 87년

대통령선거 당시 부정선거를 은폐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또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이문옥 감사관의 구속 진상규명과 재벌투기 실태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스이 감사관 석방 및 부정비리 척결을 위한

참할 것 등을 결의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 YWC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씨를 즉각 석방·원직복직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겨레 90. 6. 8

8. 감사원 반응

#이문옥 감사관

폭로 내용에 대한 감사원 해명

#여론 동향

감사원 해명

감사원은 25일 구속증인 이문우(50) 감사관이 폭로한 감사원 비리사실 7건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87, 88년 선거경비로 88억원을 집행했다는 주장

은 그기가 없으며 서울시 감사를
증명한 원도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시 예산의 선거
자금 전용은 감사 당시(1988년 11
월21일~ 12월10일)에는 전혀 보
고된 바 없었으며 이 감사원이
감사를 마치면서 편중비 정부비
보상금 등으로 서출금 3천만
위에 대한 감사를 미뤄둔 사실이라
고 보고했으나 감사가처가 없어
보고서에서 제외한 일은 있었다
고 밝혔다.

교체되었나
강사원은 또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회복에 대한 과세실태 같
사도로비 때문에 중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90. 5. 26

부서 대상企業 달랐기 때문" 감사원 비정부용 不動產비율 차이
감사원의 25일 감사자료로 토지공
률로 구속된 李文玉 죽에 시건 과 네로도 예상한 바와 같이 범
과 함께 부동산가사를 재벌 비밀로 통신하는 실수로가 추
의 회사로 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지난 8월 10일부터 29일까지 당시 마조
계획으로 충당해야 모두 끝났다. 고 말했다.
감사원에는 또 재벌기업 진통이었고 비밀로 통신하는 실수로가 추
비밀로 통신하는 비밀로 통신하는 실수로가 추
감사원자료에는 1·2%인 결과를 처리하려 했을 뿐이
라고 밝혔다.
데도 감사원자료에는 43·3%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총수가 주장을 대체 해 "은행
갈등원은 30대 재벌기업 5백
20개 법인을 분석대상으로 삼
온데 비친 감사원은 비밀로
을 통신하여 많은 23개 법인이란
를 말한다. 대체로

조선 90. 5. 26

이문옥감사관 중징계 요구

감사원, 총무처에

감사원이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를 언론기관에 알렸다는 이유로 '직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된 이문옥 감사관에 대한 중징계를 총무처에 요구한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로는 파면과 해임의 두 가지가 있으나 이 감사관에 대해서는 파면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중징계 요구에 앞서 지난 26일에는 이 감사관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겨레 90. 5. 30

민자 단독 법사위간담회 안팎

이문우 감사관의 법정진술을 듣기 위해 30일 소집된 국회 법사위는 야당쪽이 국정조사권 활동을 요구하면서 불참하는 바람에 민자당 의원들만이 참석, 이문우 감사관이 폭로한 '감사비리'에 대한 감사원의 일방적인 '해명의 마당'이 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를 반영하듯 30여명의 보도진이 몰려들었으나, 감사원에 '면죄부'를 받기 위해 주는 형식적인 회의로 끝났다.

민자당도 법사위 소속 총 13명의 의원 중 8명만 참석했고 일부 의원은 회의장 밖에 앉아 있거나 회의장 안에서 조는 등 매파진 분위기에서 '감사비리' 주장에는 이에 뜻이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었다.

이치호 위원장은 회의 서두에 "어당 단독회의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여의의 입장이 달라 무득이 간담회로 바꿔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이 많은 이문우 사고 있는 만큼 감사원의 진상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해소하는 기회를 갖자"고 말했다.

◇...이에 김영준 감사원장은 "지각없는 직원 한명이 외부에 알려서는 안되는 내부 문서를 인문서에 알리고 감사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석, 마치 감사원이

외부압력에 의해 재 의학을 못 하는 것처럼 주장해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비난하고 "오늘 오해에 대한 소명 기회를 주어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성환우 감사원 사무총장이 미리 준비한 해명자료를 낭독한 뒤 일문일답에 들어갔는데 의원들은 문제의 본질을 따지는 질문은 거의 하지 않고 감사원의

해명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듯한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끝이 이어졌다.

"원반 공무원의 면죄는 김창수사가 있기 전에 자체 기관에서 폐지해 구속유 민해주는 개정례인데 어떻게 구속까지 됐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 감사원장은 "자체 조사과정에서 이 감사관의 태도가 정상착자의 어지가 있음 정도로 좋지 않아 구속이 불가피했다"고 대답하는 등 이 감사관에 대한 비난으로 원반했으며 감사원쪽의 의원들 모두 이 감사원의 호칭을 '이문우'라고 했다.

"이문옥씨 사건 궁금증이나 풀자"
감사원 일방 해명...본질질문 없어

〈유종필 기자〉



30일 열린 국회 법사위 간담회에서 김영준 감사원장이 '이문옥 감사관 문제'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이종찬 기자〉

한겨레 90.5.31

한겨레신문 수색 요청

감사원서 검찰에 **이감사관 제보자료 압수위해**

검찰, 여론 비난 우려 거부

감사원 이문우 감사관이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에 관한 감사자료를 〈한겨레신문〉에 제보한 사실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제의 자료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한겨레신문〉에 "대한 압수색을 실시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던 사실이 8일 알려졌다.

감사원의 〈한겨레신문〉에 대한 압수수색 요청은 언론기관의 취재활동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처사여서 앞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의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 감사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적부심 결정이 있은 뒤인 지난달 말 〈한겨레신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 감사원이 제보했던 감사자료를 다시 찾아주도록 대검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이같은 요청은 이 감사관이 〈한겨레신문〉에 제공한 자료가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

동산 실태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자료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자료가 공개될 경우 또 다른 파문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

.

이 관계자는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대검은 압수수색의 타당성·적법성 등을 검토했으나 언론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경우 언론자유 침해라는 여론의 비

한겨레 90.6.9

9.보석 관련 내용

#보석청구 관련 기사

#사설

#석방

이문옥 감사관 보석허가

검찰 즉시항고 밝혀 석방안돼

서울형사지법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를 언론에 공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감사원 이문옥(51) 감사관에 대해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관련기사 3면>

서울형사지법 최춘근 판사는 30일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이번 재판이 역사에 남을 중요한 재판인 만큼 증거조사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감사관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감사원 자료를 건네준 동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이 엇갈려 관계기관에 대한 서방여부는 검찰의 항고에 대한 서울형사지법 항소부의 심리가 끝난 뒤에야 결정된다.

이 감사관은 지난 5월15일 구

법원의 이같은 보석허가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 항고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이 감사관의 석방여부는 검찰의 항고에 대한 서울형사지법 항소부의 심리가 끝난 뒤에야 결정된다.

그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구속적 부심에서는 검찰에 충분한 수사 기회를 주기 위해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따라서 이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할으로써 철학과 피고인 쌍방에 대등한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했다.

한겨레 90. 7. 1

속대 22일 구속적부심을 신청이나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김정수 부장판사)에 의해 각됐으며, 6월7일 박인제 변호사 등 변호인단을 통해 보석신청을 냈었다.

이 감사관은 지난 5월15일 구

이문옥 감사관 재판 미루지 말라 보석 허가에 정치적 계산은 없는가?

이문옥 감사관에게 보석이 허가된 것은 눈이 민체 뜨이는 소식이었다. 서울형사지법의 담당 판사는 지난 6월30일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한 우려가 없고 이민 재판이 역사에 남을 원인 만큼 증거조사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석신청을 내렸다.

기술 자체가 무당했으므로 석방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진국에 긴 치 ‘이 감사관 석방 시명 운동’이 일어나고 시민운동까지 빛이자 당국에 대한 압력이 거세진 사정을 보면 보석 허가는 담당 판사의 시혜가 아니라 국민여론의 승리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쨌든 보석을 허가한 판사의 보석 이유는 몇 가지 의문을 앓으킨다.

첫째, 이 감사관이 언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한 우려가 있다” 구속되고 직무성이 기각되었던가? 그는 당초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용과 재벌의 입김에 의한 감사 중단 사실을 <한겨레신문>에 제보한 사람이 자신임을 감사원에서 스스로 밝히고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당당한 모습으로 구속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증거 인멸’의 우려는 오히려 감사원과 정부 당국에 있다고 보았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고려한 때 그 구속 자체가 무당한 일이었다.

둘째, 이 감사관 사건이 ‘역사에 남을 재판’이라고 지적한 부분이다. 적어도 법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은 비교적 단순하고 명백한 사건이다.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용이 과인 행위로 모호해야 한 ‘국가비밀’인 지만이 생겼다. 이 감사관 사건이 확대되고 파문을 일으킨 것은 오히려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다. 녹립을 지키아 한 감사원에 재벌의 김은 순길이 뱉치고, 청와대의 알력이 가해졌다는 사실이 이 감사관의 입을 통해 터져 나오자 한 정권은 크게 당황했을 것이다. 따라서 재판부가 명쾌한 법률적

결론을 내리면 즉하지 ‘역사에 남을 재판’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보석 허가의 이유로는 설득력이 약하다.

세째, “충분한 증거조사 등 많은 공판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 당사자가 대중한 위치에서 자기주장을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도 달달이 안 같다. 물론 이 감사관을 석방해서 유리한 자료를 모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첫번째 공판 때 담당 판사는 이 감사관의 모두 진술조차 제한하고 담변을 자주 재지하함으로써 변호인단이 법관 기피신청까지 고려했다는 보도로 비루이 보면 그런 ‘선의’는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더구나 1심 구속만기가 4개월 남짓이나 남아 있다.

이 감사관에 대한 보석 허가는 당연한 일이며 그렇게 한 재판부가 비난받을 까닭은 없다. 그러나 재판부의 보석 허가 이유는 숨직하지 못했다. 왜 이 감사관의 구속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면서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 보석 허가 결정이 공판을 비롯하여 파문을 낚아보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되돌아보면 이 감사관은 구속적부심에서,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그리고 첫번째 공판에서 입장난 사실들을 잊어버리 쪽로했다. 시진이 간수록 쪽로가 진실임이 밝혀졌다. 이 감사관을 계속 구금하는 것은 그의 쪽로로 큰 상처를 입이 온 흐름 정권으로서는 ‘드러운 감자’를 안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 감사관 석방을 두고 일부에서는 한 정권의 입장이 반영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담당 재판부는 그가 보석된다고 해서 공판기일을 미루거나 심리를 늦추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빠른 시일 안에 실체적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행정당국의 ‘편의적 비밀주의’를 뿌리뽑는 데 노움이 되는 판결을 내리야 한 것이다.

90,
한겨레 7.3

9-1. 구속 후 1차 공판 관련 내용

이문옥 감사관 내일 첫공판

1990. 6. 27

제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에 관한 감사자료를 <한겨레 신문>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이 감사관 구속 42일 만인 28일 서울형사지법 최준근 판사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규정하고 있다. 또 82년 6월의 대법원 판례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반드시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

관의 감사보고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이 감사관의 감사보고서는 대법원 판례에서 규정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도 아니고 "개관적·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은 더욱 아니라는 논리를 피고 있다. 오히려 재벌그룹

제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은 정부기관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고 국민 역시 이를 알아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김찰은 또 자신들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문옥 감사관이 조사한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 43.3%가 부정화하고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무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부정화한 자료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정부의 공신력에 큰 타격을 주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김찰은 "이 감사관의 감사자료가 부정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라는 대에 초점을 맞춰 재판 준비를 해 왔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이 43.3%라는 감사보고서가 실제로 존재했고 이 보고서가 중간보고서로서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 감사관 스스로도 <한겨레 신문>에 제보할 때 충분히 밝혔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특히 변호인단은 확정되지 않은 중간보고서를 왜 공개하지 않으면 안됐는가 하는 점을 괴고들어 감사원의 감사가 '외부의 힘'에 의해 중단됐거나 회회된 사례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이 감사관의 행위가 정당했고 끊기가 순수했으며 감사원이 그동안 과정적으로 운영됐음이 입증될 것으로

변호인단은 보고 있다. 변호인단은 또 지난 25일 국세청이 5개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18.2%라고 발표한 사실에 크게 고무되어 있다. 비록 판정기준이 다르더라도 이는 재벌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은 은행감독원이 발표한 2%보다는 훨씬 높다는 이 감사관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찰은 국세청이 조사한 18.2%는 이 감사관이 조사한 43.3%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내세워 국세청의 발표는 이번 재판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철원 기자)

기밀누설·알권리 법정공방 예상

부정확 자료로 정부 공신력 실추 감사중단 외압부각...정당성 초점

변호인

본 정부와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개관적·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고 포함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김찰은 재벌그룹에 속한 23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이 43.3%라는 이문옥 감사

監查제지 압력 많았다

李감사관
공판진술



감사원 비리를 언론에 폭로·기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감사원 전 감사관 李文玉 피고인
이 28일 첫 공판을 밤기위해 법정으로 가고
있다.

海外大사관감사 安企部가 주도
퇴역군인 글프장출입 세금혜택
외빈초청비용 海外개발公 부담

후상 비밀수설들이 구
속기소원 전역사원감사 李
文玉과 고인 50여 대한 정부
판이 28일 원전 10시 서울에서
지법 廉署最高사실로 열려
총리과 고인의 물진술이 있었
다.
총리과 고인은 지난 88년 죽음
지방서 청탁사 당시 삼성전
자가 대邸에 있은 큰 계약에
총장하는 비용 4천만화
금에 부담되면서 사망이

여한 뒤에도 이들이 저 세금
세금을 주면 그것이 저들의
세금으로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저 세금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시정되지 않고
있단 말이지.

동아 90.6.2

감사원도 외부압력 받았다

李文玉씨 청공판 "全敬煥씨 조사도 상관이 제지" 주장

마진하고 서둘러 청구하였다
을 대렸다』고 대렸다.
장례에 이어지기 손이자
전통을 품은『마리아』를
에 빠트린『마리아』는
의 종친교구로 돌아온
부분식으로 각자 관례로 차운
장례가 되었지만 청탁은
사시 학교에 차운
장례였다. 그 장례는
장례에 차운 학교에 차운
장례였다. 그 장례는

조선 90.6.29

이 감사관의 폭로는 '진실'이었다

국세청이 입증한 은행감독원의 잘못

재벌들이 갖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해서 지난 25일 국세청이 발표한 내용은 이문옥 감사관이 구속된 뒤 분분하던 여론에 명쾌한 답을 내려주었다.

이 발표는 5대 재벌에 한정된 것이어서 미흡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룹들을 망라하고 있어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실태를 알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삼성·현대·럭키금성·대우·한진의 5개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전체 부동산의 18.2%가 된다고 한다. 이 수치는 은행감독원이 발표한 '2%'의 9배 가 넘는 것으로서 국세청이 같은 공공기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것은 이문옥 감사관이 밝힌 '43.3%'에는 못미치지만 그가 강조하고 했던 재벌의 부동산 투기실상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국세청의 조사는 그 재벌회사들이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해 낸 신고서를 기준으로 했다고 한다. 제3자 명의로 된 부동산 가운데 신고되지 않은 것이 있고, 그 양도 적지 않으리라는 것은 물론이다. 또 국세청이 업무용이나 아니냐를 가리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근질긴 '공작'에 관계자들이 꽤나 시달렸다는 후문도 있고 보면, 관정기준을 적용할 때 애매한 부동산들이 업무용으로 구분되었으리라는 추측도 할 수 있다.

이런 국세청의 발표가 나오자 은행감독원은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였다. 이용만 감독원장은 서둘러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준일시와 관정기준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격차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그래도 '너무 많은 차이'라는 지적을 받자 "기본적으로 은행과 재벌은 상인과 고객의 관계이기 때문에 관행상 엄격하게 관리

하기가 어렵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솔직한 고백일 수도 있다. 은행과 재벌의 유착관계를 이처럼 짙은 말로 적절히 표현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은행을 감독하고 그 유착관계를 바로잡는 일에 앞장서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까지 아무런 반성도 없이 이런 발언을 할 만큼 사태는 잘 데까지 가버렸다.

은행의 '환 고객'은 누구인가? 재벌들은 큰 거래를 하는 상대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은행의 큰 채무자일 뿐이다. 서민들은 적은 돈을 들고 찾아가지만, 어렵게 저축해서 은행에 맡기는 채권자들이다. 이들은 필요할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지도 못하는 '고객들'이다. 은행은 그들의 '푼돈을 모아다가 재벌들이 땅 사는 데 뒷돈을 대어주는 일에 몰두했다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다.

고위공직자들도 부동산 투기를 해 온 사실이 조금씩 밝혀지면서 돈 버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 마다지 않는 재벌들이 부동산 투기에 손을 댄 것을 당연한 듯이 넘겨버리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끼니를 걱정하며 거리에 손수레를 끌고나간 빈민들이 이리저리 쫓기는 세상에서, 남의 돈으로 투기를 하는 일에 은행이 협조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은행의 예신관리를 강화해서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사리대로라면 백번 옳은 말이다. 그러나 서민은 눈여겨 보지도 않고 재벌만을 고객으로 모시겠다는 은행과,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은행감독원에 다시 기대를 걸겠다는 것은 아무 일도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정부 당국이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뿌리뽑지 않으면 절름발이가 된 국민경제를 되살릴 수 없을 것이다.

한겨레 90. 6. 27

10. 이문옥 감사관 수상 관련 내용

로서 수사상의 접근이 쉽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또한 삼성·현대·선경 등 대재벌 그룹은 물론 서울시·포항시·군인공제회·80년의 계엄사 합동수사부 등 조사대상 역시 광범하기 짝이 없다. 지금까지의 수사관례로 보아 이감사관이 진술한 8건 중 단 한건의 진위를 밝히는 데도 10여일이 걸렸는데, 검찰은 어떻게 그처럼 발빠른 행보로 조사를 끌내고 서둘러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는 게 시민들의 반응이다. 검찰수사는 이감사관이 폭로한 내용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이 아니라 여론 전화용 '해명성 수사'에 그쳤으며, 이처럼 검찰이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자세를 취한 것은 불가항력적인 외압 때문일 것이다는 추측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러한 여론을 등에 업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일 서울 및 대구에서 시민대회를 열고 ①이감사관의 즉각 석방 ②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 ③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 제정 ④재벌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실태 전면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全民聯은 5월26일부터 이감사관 석방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국민연합은 '권력형 비리 및 재벌소유 토지조사에 대한 국민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도 대한변호사협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기독교사회단체 등에서도 '이문옥 석방'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7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평민당·민주당(가칭)·국민연합 공동주최로 열린 '진상규명 및 석방촉구대회'에서는 이감사관을 대신한 부인 崔重淑(46)씨에게 '용감한 공무원상'을 수여하고 그의 구속은 '재벌 위주 경제정책의 허상'을 감추고 '87년 대통령선거의 부정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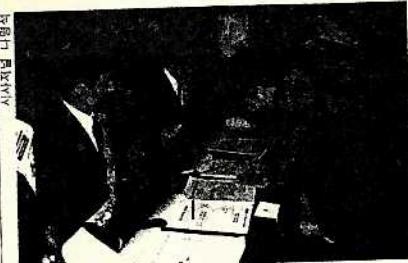
문을 채택했다. 이날 차트를 들고나온 柳寅鶴 의원(평민)은 "강남구 일원동의 땅 12만평은 삼성생명과 친인척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노른자위 7만평은 서울시의 주택개발지구로 편입되지 않았을 뿐더러 지하철 신설노선이 그 땅의 중앙을 가로질러 가고 있다."(그림 참조) "롯데그룹이 보유한 강동구 신천동 롯데월드 건물 건너편의 땅 2만6천여평은 87년 12월 서울시로부터 평당 3백7만원에 매입했는데 채 3년이 안된 지금 땅값이 10배 가까이 올랐으며, 현재 주차장 등으로 쓰이고 있으나 이는 업무용

으로 위장하기 위한 처사"라고 밝히고, 이런 사례들은 "이감사관의 폭로사실이 진실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도로 평민당 조사대책위원회(위원장 洪英基의원)는 수감중인 이감사관을 결회 접견하고 그의 진술내용을 자체조사한 결



'이감사관 가족들 기자회견' 음식점에서 (6월9일 경실련 강당)



'이문옥씨를 즉각 석방하라'고 서명하는 시민들



'진상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 6월2일 파고다공원에서 집회를 가진 시민들이 시기행진을 하고 있다.

과, 지난 80년 계엄사 합수부(본부장 全斗煥 당시 보안사령관)가 부정축재자들로부터 환수한 1천1백33억원 가운데 3백97억원이 증발되었음을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환수재산의 차액발생에 대해서는 지난 89년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 때 모두 확인, 보고되었으며 당시 확인되지 않은 차액 21억원에 대한 사항은 오는 임시국회에 보고 할 예정"이라고 해명하고 있어, 이 문제는 여름 정국의 '핫이슈'로 비화될 조짐이다.

이처럼 '이문옥 진술파문'은 시간이 흐를수록

연계질선으로 이어진 지뢰밭처럼 엄청난 폭발음을 터뜨리며 권력의 상충부로 점화되어가고 있다. 처음 그가 언론에 제보한 내용은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 및 그에 관한 비리'로서 그 주된 공격목표는 재벌기업의 부도성이었다. 그러나 그는 구속된 이후, 예산 88억원의 선거자금 전용·계엄사 합수부의 환수재산 유용·그룹회장이 麻大통령과 사돈관계인 선경의 법인세 12억원 탈세 등 정치적으로 극히 민감한 내용들을 폭로함으로써 '이문옥 진술파문'을 정국의 최대 현안으로까지 밀어올리는 데 성공한 셈이다.

"관료사회 도덕률을 근원적 검증 필요" 여론도

"그가 옳은가, 아니면 검찰이 옳은가, 그에게 '용감한 공무원상'을 수여한 야당과 국민연합은 그의 진술이 진실임을 밝혀줄 명백한 물증을 가지고 있는가." 진상규명대회의 방청석에 앉은 한 시민은 "냉정한 눈으로 사태를 주시하고자 한다"며 위와 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현시점에서는 '의문이 곧 여론일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임시국회와 이감사관에 대한 재판과정을 통해 의문의 상당부분이 밝혀질지 모른다. 그에 따라 50세의 감사관 이문옥은 부패와 비리의 城을 향해 '單騎돌진'을 감행한 義人'인지, 아니면 그와 정반대로 '회대의 거짓말쟁이' 인지도 판별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진술한 사실의 진위를 가리는 문제와는 별도로, 관료사회의 도덕률에 대한 근원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번지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에도 80만 공직자가 인간양심의 법칙에 따라 살 수 있는 인본주의적 행정의 틀이 마련돼야 한다. 경복된 관료주의의 石化作用에 의해 공무원 개개인이 '살아 있는 존재로서의 반응'마저 포기

당해야 하는 메커니즘 속에서는 참다운 공직자의 윤리가 썩트기 어렵다"는 게 이러한 여론의 요체라 할 수 있다.

모든 경제·사회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며 과세·치안·환경감시·복지후생 등 국민생활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는 공무원의 기능을 고려할 때, 그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어떤 외압이나 부당한 간섭에 의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야 할 것이다.

朴相基 치장



경실련 출범1주년 이문옥 감사관에 시민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변형윤·황인철·송월주·이효재)은 출범 1주년을 하루 앞둔 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YWC A 대강당에서 '출범 1주년 및 <경제정의> 창간 기념식'을 가졌다.

경실련은 이날 김사원 비리를 폭로해 구속된 이문옥 전 김사원

을 '경제정의를 실천한 시민상' 수상자로 선정, 부인인 허중숙(46)씨에게 대신 상패를 전달했다.

경실련은 지난 1년 동안 토지·주택문제 등 우리경제의 구조적 모순점에 대해 여론을 환기시키며 금융실명제 도입, 한국은행법 개정 등을 위해서도 활발한 '시민운동'을 벌여 경제학인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영향력을 있는 단체로 활동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진=진정영 기자)

한겨레

90.7.8

李文玉파문」 쟁폭再燃 조짐

국민 90
12.28

118

「李文玉파문」 증폭再燃 조짐

李文玉·김시관에 장계위 출두요구

도아 90.12.28

문옥감사관 파면

1990.2.28

중앙징계위 이씨, 결정불복 소청심사 청구 밝혀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를 폭로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7월13일
풀려난 이문옥 감사관이 27일 파
면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제2중앙징계위(위원장 정문화)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는데,

이 갑사관은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하여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징계위는 ‘이문우 전 갑사관은 갑사활동으로 취득한 자료는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유출시켰으며 이후에도 대중집회에 참석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아 파면한다’고 의결했다고 한 당국자가 전했다.

이에 앞서 이 감사관은 중앙정계위에 출석해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게 평소 신념이었으며 제별의 비업무용 토지보유 실태에 대한 감사가 외부압력 등으로 중단되는 사태를 좌시할 수 없어 감사원의 위상을 바로 잡기 위해 언론에 이 사실을 폭로했으며 이같은 행동은 아직도 떳떳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자신의 입장문을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5월15일 이 감사관의 폭로가 있자, 5월26일 조치를 위해 세 조치를 한 뒤 충무처에 출진계를 요구한 바 있다.

이감사관 '올해 인물'로 기자협회 선정

한국기자협회(회장 이근성)는 27일 '전국 기자가 뽑은 올해의 인물'로 이문옥 감사관을 선정했다.

기자협회에 따르면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이 감사관이 총투표자 3,113명 가운데 37.8%인 1,176표를 얻어 윤석양의 인물로 선정됐다. 이 감사관 외에는 보안사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윤석양 이병이 923표, 30년 동안 김밥 장사로 모은 50억원 상당의 재산을 충남대에 기증한 이복순 할머니가 808표를 각각 얻었다.

한겨레 90.12.28

이문옥 전감사관 무죄 선고

서울형사지법 부동산자료공개 비밀누설로 볼수없다

재벌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 과
다보유 실태를 폭로했던 이문육
(53) 전 감사원 감사관에 대해 무
죄가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10단독 김건일 판사는 6월 90년 5월 23개 재벌 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와 업계 로비에 의한 감사증단 사실을 <한겨레신문>을 통해 공개해 직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징역 1년에 이어 된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피고인이 공개한 감사자료는 직무상 얻은 비밀로 볼 수 없으므로 검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 적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년이 구형된 이문옥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기사 18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공개한 김사원·충간강사자료는 그 내용이 심장한 근거에 바탕을 둔 것으로 ‘국가·공권력을’ 실추시킬거나 해당기업에 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부동산투기 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국민의 권리 등에 비추어볼 때, 이를 개하지 않는 것이 절부나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피고인이 공개한 홍재형 재무장관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6일 오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자료는 직무상 얻은 비밀로
수 없으므로 검찰의 공무상 비
누설죄 적용은 잘못된 것"이라
판시했다.

한겨레 93. 9. 7

李文玉前官司無罪선고
서울地法 “資料공개로 公益에 도움졌다”

한국의 93.9%

122

“국가, 정보獨旨 잘못” 첫 判決

사법처리된 다른 良心선언자도 영향줄듯

1977년 10월 10일자 『경기신문』

이문옥 전감사관 무죄판결 의미
써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하고 정부의 정보독점을 무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90년 5월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과다보유 실태를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11년이 구형된 이문숙(53) 전 감사원 감사관에게 6일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공직자의 비밀유지 의무와 국민의 알권리가 충돌될 때 국민의 알권리를 더 우선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판결은 특히 공직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명백히 비밀로 분류된 것으로 한정함으로 부동산업자에게 누설한 것으로, 이 전 감사관의 '공익적 성격'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전 감사관의 폭로 당시 공개자료 내용의 성격으로 인해, 정부가 이 전 감사관을 전격 구속한 것은 '폭로에 따른 보복'이란 비난을 시기도 했으며, 그 뒤 이 전 감사관의 폭로가 사실로 드러나자 이 전 감사관을 보석으로 풀어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이 전 감사관에 대한 판결은 공무원의 공무상 비밀논란에 헝그리지 않는다는 그러나 이 전 감사관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은 "실질적 비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단지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과정중인 중간문서라는 사유만으로는 법령상의 직무상 비밀로 볼 수 없다"고 밝혀 공무상 비밀을 '명백히 비밀로 분류된 것'으로 사실상 한정하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향한 진일보한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전 감사관은 이날 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해 "애초부터 공무상 비밀논란에 헝그리지 않는다는

용기있는 양심의 ‘소중한 승리’

공무상 비밀 범위 첫 판례···내부 고발자보호법 서둘러야

그동안 공무상 비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거나 법령에 의한 직문서 비밀

또 한준수 전 군수, 윤석양 이
나, 이지문 중위 등 과거 정권 아
시서 양심선언을 한 공무원들의
동과 관련해 내부고발자 보호
(또는 양심선언자 보호법)의
법화 운동이 더욱 활성화할 것
은 전망된다.

이 되는 것”이라는 대법례에 따라왔다. 이러한 판례는 재이법 물론 법원내부에서도 “직밀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

써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하고 정부의 정보독점을 무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 전 감사관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은 "실질적 비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단지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 과정 중인 중간문서라는 시유만으로는 법령상의 직무상 비밀로 볼 수 없다"고 밝혀 공무상 비밀을 '명백히 비밀로 분류된 것'으로 사실상 한정하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향한 진일보한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 여겼기 때문에 무죄는 당연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과거 판례에 얹매이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 전 김사관은 또 "이 사건은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아니나 보다는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이 외부의 압력이나 상부지시에 의해 중단됨으로써 국민의 이익이 침해받았다는 점이 더 주목됐어야 했다"며 정부기관의 자정노력과 함께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반드시 재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 93.9.7

정의는 이긴다

이문옥 전 감사관 무죄판결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러리라 믿고 살고는 있지만, 그 말을 실감있게 느끼게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토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요구가 강력했고, 국회가 청문회까지 열었어도 광주항쟁에 얹힌 매듭은 전혀 풀린게 없다. 요즘 한창 떠들썩한 12·12나 을곡사업, 평화의 담 건설 비리나 의혹이 밝혀지고 책임소재가 속시원히 규명되리라는 기대 또한 무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런 중에 지난 6일 있었던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에 대한 무죄판결은 모처럼 초가을 선돌바람 같은 청량감을 안겨준다.

이문우 감사관이 구속기소되고 감사원에서 직위제한에 파면이라는 고초를 겪게 된 것은, 그가 '23개' 재벌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비율이 43.3%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는 데도 업계의 로비에 따라 상부의 지시로 감사원의 감사가 중단됐다는 사실을 <한겨레신문>을 통해 사회에 고발한 때문이었다.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부조리는 내부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만 척결해 낼 수 있다는 소신을 실천에 옮긴 것이지만, 바르지 못한 정권은 그의 바른 행동에 부담한 공권력 행사로 대응했던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차례 이 감사관에 대한 구속과 파면의 부당함을 지적해왔다. △은행감독원의 공식발표를 통해 30대 재벌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이 1.2%라고 한 것을 비웃기나 하듯 뒤엎었다거나 △감사원 감사가 외부의 압력으로 중단됐다며 부끄러운 곳을 들춰냈다는 사실들이 이 감사관을 구속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검찰이 구속사유로 내건, 단기간의 조사로 부

실한 내용에다 최종의결조차 거치지 않은 중간 문서라는 구차스러운 이유들은 결국은 정부가 비위에 거슬리면 누구나 처벌할 수 있다는 독선적 의지를 과시한 데 불과했다. 거듭 강조하지만 검찰은 이제 국민의 상식이나 법감정에 맞지 않는 일처리로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의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런 점에서 더욱 의미있을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무죄판결은 예상했던 것이긴 하지만 공직자의 비밀유지 의무에서 '비밀'을 '명백히 비밀로 분류된 것'으로 한정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무게를 주었다는 점에 관심을 갖고자 한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그간 담당 법관의 인사 등 법원의 사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기소 뒤 3년 3개월이나 지나서야 판결이 났다는 사실이다. 무죄판결을 내려야 할 법원이 판결을 주저했다는 견해는 무시하더라도 그동안 피고인이 겪은 고통과 고초는 보상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날의 판결을 문민시대를 맞은 시대분위기의 반영으로 보려는 일부 시각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런 의미에서 판결의 지연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는 이런 견해를 배격한다.

아무튼 이 감사관은 오랜 투쟁끝에 무죄판결을 얻어내어 정의는 이긴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었다. 이 1심판결이 최종적인 것이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고법에 계류중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승리하기를 기대하지만, 바라기는 현 정부가 스스로 파면을 취소함으로써 잘못을 바로잡았으면 하는 것이다.

한겨레 93. 9. 8.

정보공개법의 필요성

○ 깨어 떠여서는 대체로는 만의
금방적인 전들이 있고 또 혼자
추진통이 있다. 출처가 헤밍웨이의
공간의 시각까지 만들었고 남미에
며칠간 헤밍웨이가 헤밍웨이로
개별화 헤밍웨이 자체를 제작할 것을
만족감으로 전하고자 의결했다. 다만
때문에 95년에 가서 실시에 들어가
도록 스케줄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 편집 과정이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헤밍웨이 투명성과 깊이의
재현여가 신장된다는데 있다. 또
국내 웹의 자의적인 정보유출을 막

는 것과 동시에 그 짐작을 이용하여
국민자의 부정과 뇌를 박제로 기울여
기억할 것이다. 국민은 그 국민으로서 보여
원을 염려해서 보면 그들이 애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짐작을 만드는데는 대체로
어려움이 있을 줄 안다. 특히 전시
백만에 걸친다는 국적증의 목
록을 정리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전신화 차례로 많지만 암울한 것이
다. 또 전보의 내용은 국가가 국가가
유지에 관하여 국가 안전의 문제,
법률집에 악용될 가능성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 등을 배제하고
거기에 따른 안전장치도 있어야 할
줄 안다.

조선 93. 9. 8

“양심선언 보호 법제화 필요”

1993. 9. 8

인민일보



“이번 무죄판결을 계기로 공직 사회의 부정비리를 폭로하는 양심적인 내부고발자를 보호해 주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90년 5월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를 폭로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1년을 구형받은 뒤 3년4개월 만인 지난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문옥(53·사진) 전 감사원 감사관은 7일 “법이 나뿐만 아니라 한준수 전 군수, 윤석양 일병 등 양심선언을 한 사람들도 보호해줘야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죄판결 소감은?

=나 자신은 무죄라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과거의 예로 보아 법원에서 과연 무죄로 판단해줄지는 회의적이었다. 이 사건은 6월 때에는 재판조차 열리지 못했을 정도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재판부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소신있는 판결을

부를 결정하겠다.

-김영삼 정부 출범 뒤 감사원이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감사원이 예전과 달리 철저한 사정활동을 벌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현 감사원장의 역량과 의지에 좌우된 측면이 크지 감사원이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했기 때문은 아닌 것 같다. 한 예로 양심선언 당시 감사중단 압력을 행사한 인사들이 현재 요직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앞으로 감사원이 정말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과거 정치의 잘못뿐 아니라 현 정권과 현직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사정활동을 벌여야 한다.

이 전 감사관은 “지난 3년 남짓 온갖 어려움을 겪은 아내가 이번 무죄판결에 대해 나보다도 더 기뻐했다”며 “아내도 고맙지만 이번 사건과 현재 계류중인 형사 소송에서 무료 변론을 맡아주며 무죄를 이끌어낸 박인제 변호사에게 특히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열 기자

내려준 데 대해 감사한다. 정말 시대변화를 실감한다.

-당시 양심선언을 하게 된 동기는?

=이 사건 재판이 공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되느냐 아니냐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돼왔지만 사건의 본질은 권력의 부당한 압력과 상부지시에 의해 정당한 감사활동이 중단됐다는 데 있었던 것이다. 상부의 압력과 이에 순응해온 공직사회의 관행을 없애자는 게 양심선언의 목적이었다.

-이번 무죄판결로 복직될 것 이 확실해졌는데,

=현재 서울고법 특별부에 계류중인 파면처분 취소청구소송이 선고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승소할 경우 감사원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는지를 판단해본 뒤 복직 여

한겨레 93. 9. 8

‘무죄판결’ 반응 엇갈려

◇…7일 재벌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 과다보유 실태를 폭로했던 이문옥(53) 전 감사원 감사관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감사원 간부들과 젊은 직원들이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 젊은 직원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며 “새정부 출범 이후 사정의 중추기관으로 등장한 감사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진정한 국민의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이 전 감사관의 무죄판결을 환영했다.

그러나 일부 간부급 직원들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무어라 말할 수 없다”며 언급을 피하는 등 애써 무관심한 표정을 지었다.

한겨레 93. 9. 8

이문옥씨 무죄선고 환영
민주당, 원직 복직 촉구

권율순 민주당 부대변인은 7일 이문옥 전 감사관에 대한 무죄선고와 관련해 “때늦은 감이 있으나 당연한 결과로서 환영한다”면서 “무죄가 입증된 이상 원직에 복직돼야 한다”고 논평했다.

한겨레 93. 9. 8



일시: 93. 9. 18 (토) 오후 1시 장소: 경찰청

"경찰은 이문옥 전 감사관 항소를 포기하라" 이문옥 전 감사관 항소에 항의, 1시간동안 시위를 벌였다.

이문옥 전감사관 항소규탄 경실련회원 검찰청사 시위

경실련 회원 50여명은 18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재벌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폭로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이문옥 전 감사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 전 감사관을 항소한 검찰의 행위는 구태를 벗지 못하고 개혁과 민주화로 나아가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하며 즉각적인 항소 취하를 요구했다.

한겨레 93. 9. 18

검찰서 불복 항소
李文玉피고 무죄 판결
법원 내린 53)에 지난 6일 서울지검은 15판부(明魯昇)
항소부에 불복 항소했다. 14일 서초구 검찰서 무죄 판결을 받아 이전까지 관찰이

93. 9. 15

128



'시민감시단' 발대식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숭동 흥사단 강당에서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가 '공명선거실천 시민감시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관권개입감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문옥 전 감사관(오른쪽에서 두번째) 등 3백여명의 참석자들이 공명선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우 기자·관련기사 14면>

시민의 시민 93. 9. 25

129

무죄판결 받은 이문옥 前 감사관 “감사원 남은 숙제는 체질개선”

그동안 ‘양심선언자의 대부’를 자처하며 가시밭길을 걸어온 이문옥씨에게 ‘문민 법정’은 무죄를 선물했다.
“감사원은 아직 체질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의 대쪽기질을 그대로 드러낸 인사말이다.

“감 사원이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이나 이희창 감사원장이 없다면 지금처럼 비리척결에 앞장설 수 있겠는가. 감사원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지난 9월6일 형사지법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문옥 전 감사관(55세)이 다음날인 7일 경실련 주최 축하 리셉션에서 행한 일

성이다. 이문옥 전 감사관은 3년4개월여에 걸친 법정싸움에서의 승리감과 놀라운 감사원의 개혁을 강조하게 주장, 관심을 끌었다.

그는 특히 이날 축하모임의 인사말을 통해 감사원의 ‘체질개선’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국가통치를 주식회사의 경영론에 비유했다.

“감사(감사원)는 경영자(정부)를 견제하고 문제점을 주주(국민)총회에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감사원이 정부와 결탁하면 주주인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다. 우리의 지난날이 이러했다. 감사원 자체의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구속 주장 인사를 고위직에 그대로”

이 전 감사관은 90년 5월 감사원 재직시절 감사자료인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현황을 언론에 공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 9월6일 서울형사지법(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의 판결문 요지는 “공무원이 직무상 얻은 비밀도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 전 감사관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이번 판결로 이전 감사관의 감사자료 공개 동기가 그동안 승진탈락에 따른 불만이라고 몰아붙였던 일부 시각을 잠재워 버렸다.

이 전 감사관은 “90년 당시 감사원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게 비일비재했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감사원 기능이 마비되면 큰 문제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전 감사관은 이번 무죄판결로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행정소송(파면처분 취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의 복직문제가 세인의 관심을

↑ 이문옥 전 감사관은 감사원이 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사진 우철훈 기자>

모이고 있다. 현재 그의 복직에 대한 감사원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냉담하다. “감사원 조직에 커다란 상처를 입힌 장본인”이라며 복직에 부정적이다. 특히 고위간부로 올라갈수록 이같은 입장이 두드러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전 감사관은 복직문제에 대해 그리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 그는 “감사원의 체질개선이 이뤄지면 복직은 당연히 이뤄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원에 근무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단호하다.

파면된 데 따른 행정소송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는 이번 무죄판결로 유명세를 물게 돼 하루 24시간을 바쁘게 보내고 있다. 각종 언론매체의 집중조명을 받고 있고 강연 초청도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에 있기까지 그가 걸어온 길은 가시밭길이었다. 우선 생계비부터 벽에 부딪쳤다. 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50%의 연금(현재 월 68만원)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아들이 이 전 감사관이 파면된 직후 신문배달원을 하기도 했다.

다. 그는 요즘 그의 심경을 한마디로 “살맛 난다”고 말한다. 역경을 거치는 동안 더 많은 새로운 동지들을 알게 됐고 모든 것이 ‘전화위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그는 지난 5월 중단된 행정소송과 관련해 “내친김에 행정소송의 재개를 서울 러 복직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말 한준수 전 연기군수, 윤석양 전 보안사 이병, 이지문 전 중위 등 15명의 양심선언자를 중심으로 ‘나라사랑양심선언자 모임’을 결성, 회장을 맡고 있다. 이 전 감사관은 “87년 이후 지금까지 50여명에 달하는 양심선언자를 규합, 서로의 장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싶다”고 ‘양심선언자의 대부’를 자처하고 나섰다.

“정부의도 따른 동료진술 괴로웠다”

다음은 일문일답.

— 무죄판결 소감은.

“당연한 귀결이다. ‘아내는 이제 죽어도 소원이 없다’고 말한다.”

— 1심에서 무죄판결을 예상했는가.

“30대 후반의 젊은 판사(김건일 판사·37)가 맡아 무죄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선고 당일 조깅을 하면서 무죄판결에 대비, 기자회견 내용을 나름대로 메모했다.”

— 행정소송도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여러 얘기가 들린다. 그러나 문민정부하의 사법부 분위기를 감안할 때 과연 최소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복직하는가.

“일단 복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감사원에 계속 근무할지 여부는 상황봐서 결정하겠다. 감사원 내부의 체질개선이 이뤄지는지가 변수다.”

— 14대 총선에서 출마했는데 앞으로 정치할 생각은.

“그때는 광주시민이 민주화투쟁 차원에서 시민후보로 내세웠기 때문에 나섰던 것이다. 지금은 답변하기에 이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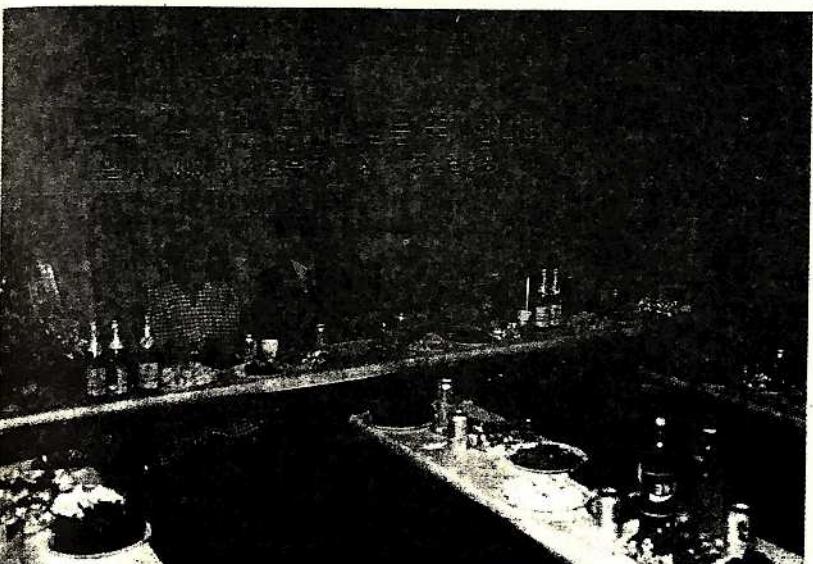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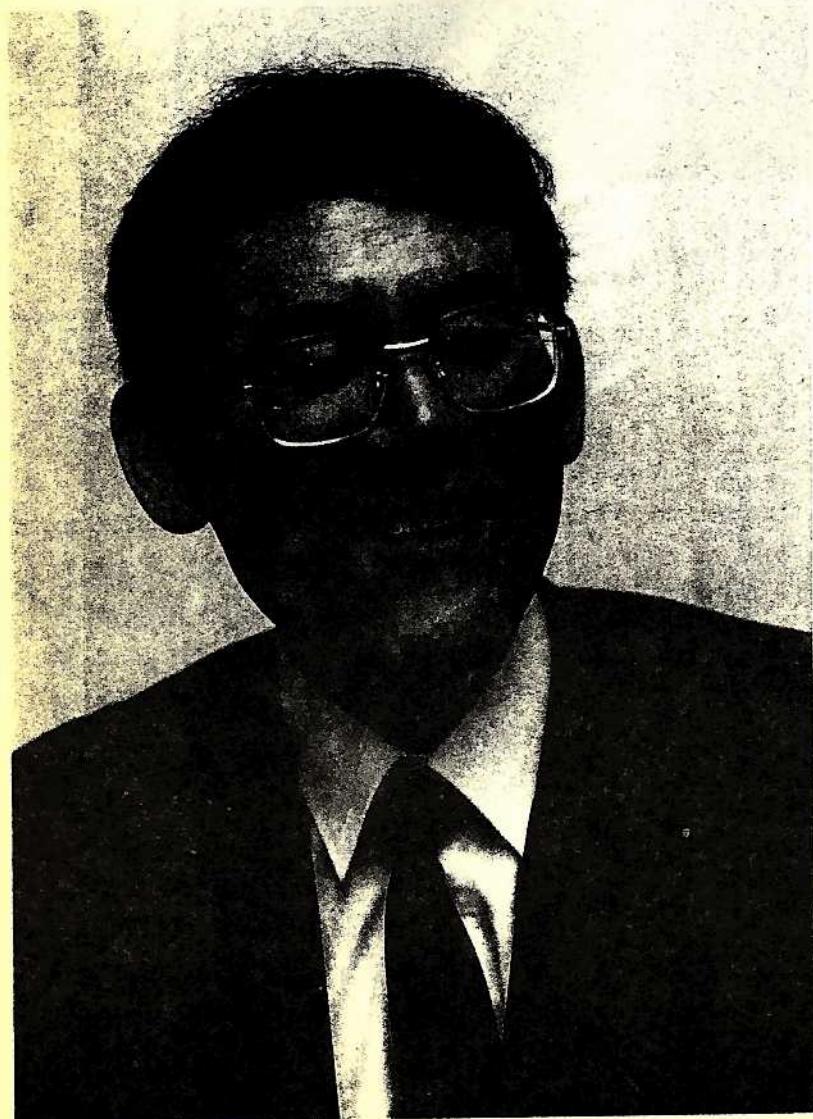
— 그동안 가장 괴로웠던 일은.

“내가 구속된 후 감사원 동료들이 불가피했겠지만 정부쪽 의도대로 법정진술을 했던 일이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3년을 넘게 무료로 나를 변호해준 박인제 변호사를 비롯, 주위 친지들에게 감사한다.” ■

〈김근식 기자〉



지난 6일 형사지법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문옥 전 감사관을 위한 경실련 축하연. 그는 법정싸움과정에서의 고충보다는 감사원 개혁에 관해 더욱 목청을 높였다.

이 전 감사관은 지난 4월 감사원에 4개 사항을 요구했다. 감사원장은 판사를 사용하지 말것, 청와대 및 안기부 등 권력핵심 부터 감사, 감사원 직제의 세분화, 감사원의 체질개선이었다. 이 전 감사관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체질개선을 제외한 모든 사항은 이뤄졌다”며 감사원의 내부수술을 주장하고 있다.

“90년 사건 발생 당시 나의 구속문제를 놓고 감사원에서 하루종일 토론을 벌였다. 구속을 주장했던 인사들 중 다수가 현재 감사원 고위직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는 “그러나 감사원이 예전과는 달라진 만큼 국민들이 계속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적어도 감사원이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감사원에 대한 애정표시도 잊지 않았다.

그는 이제 법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단지 90년 당시 사표를 내지 않고 강제

파면된 데 따른 행정소송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는 이번 무죄판결로 유명세를 물게 돼 하루 24시간을 바쁘게 보내고 있다. 각종 언론매체의 집중조명을 받고 있고 강연 초청도 쇄도하고 있다.

“미운 오리새끼 취급받으며 복직

법정투쟁 4년만에 파면취소판결받은 李文玉 전감사관



그것은 4년에서 꼭 15일이 모자라는 시간이었다. 지난 90년 5월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파다보유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폭로, 파면됐던 전감사원감사관, 李文玉씨(55)가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으로부터 파면취소판결을 받기까지의 세월이다.

“4년이란 세월이 길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동안 미약하나마 나름대로 할일들이 꾸준히 이어져서 그랬나 봅니다. 어쨌든 재판부가 용기있는 판결을 내려준 것이 고맙고 또 기쁩니다.”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어낸 이후 만난 李씨는 그때까지도 소감을 묻는 기자의 말에 다시금 법정에서의 판결 순간이 떠오르는 듯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보안사 민간인사찰을 폭로했던 尹錫洋건, 14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군부재자 투표부정을 폭로했던 李智文전중위건, 관권부정선거 사실을 폭로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韓峻洙전충남연기군수건에서 최근에는 조계종사태에 이르기까지 그간 자신을 필요로 했던 일들이 무연하고 많았었다는 얘기다. 그런 李씨는 인터뷰내내 시종 환한 표정이었다.

국민의 알권리가 공무상 비밀에 우선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이 李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데는 “李씨가 당시 언론에 공개한 범인

▲4년에 걸친 줄다리기끝에 최근 파면취소판결을 받은 전감사원감사관 李文玉씨는 시종 밝은 표정이었다. 그러나 정작 그의 복직문제가 어떤 식으로 최종 매듭지어질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金度亨기자〉

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에 관한 감사원 자료는 국민적 감시의 측면에서 공개되는 것이 필요하고 정부나 국민에게 이익이 되므로 이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란 해석이 전제되었다. 이날 재판부가 제시한 판결문은 좀 더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가공무원법상의 비밀이란 행정기관이 비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李씨가 공개했던 자료는 개별기업의 경영상 비밀을 침해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국가경제의 중심을 이루는 대기업에 대한 과세실태의 정당성을 점검, 국민들의 공개적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미이므로 비밀을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 당시 감사는 정상적인 절차와 관행을 벗어난 것이었으므로 李씨가 국가에 이익이 된다는 신념으로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그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권리가 응당 공무상 비밀에 우선돼야 함을 재확인해 준 결과로 압축될 수 있다. 또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행정정보공개법’제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고, 향후 양심선언자보호법 제정에도 활기를 불어넣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모두를 떠나 이번 판결의 결과는 구속과 함께 파면처분을 받아야 했던 李씨를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했으며, 명예회복과 복직을 가능케 했다는 사실에 우선 의미가 깊다. 그런 만큼 앞으로 한동안은 또 다시 李씨의 복직 여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게 됐다.

“떠나던 당시의 직급이 무난한 조치”

이에 대해 李씨 자신은 “아마도 감사원을 떠나면 당시의 직급이 주어지게 될 것으로 본다. 그것이 양측이 가장 무난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조처일 것이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李씨가 파면되던 당시의 직급은 4급. 감사가 중단되고 감사반원들이 전보발령을 받으면서 감사원 교육실에서 근무한 그는 직원들의 감사관련 교육을 맡았었다. 李씨가 말하는 ‘무난한 조치’란 바로 그 교육실로 복귀하게 되는 것을

구걸 안할 것”

뜻한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 및 여러 단체들을 상대로 회계감사기법을 비롯, 전반적 회계이론을 강의해 왔습니다. 4년여의 공백은 있었지만 감사관련 교육을 맡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전혀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간 자신의 공백기간 ‘경력’을 밝히는 李씨는 그러나 “결코 자리를 구걸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또 절대 미운 오리새끼 취급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뼈기를 박았다.

이는 만약 감사원이 도저히 자신이 수락할 수 없는 한직으로 발령낼 경우 당당히 거부하고 나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감사원 내부에서 한직으로 통하는 ‘연구관’이란 보직을 받게 되는 상황을 가정하는 말이기도 했다.

당사자인 李씨가 이처럼 향후 복직문제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에 비한다면 현재 감사원족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다소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패소판결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감사원 내부 분위기도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의 복직을 시대상황에 비쳐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전반적 분위기인 하다. 하지만 여전히 李씨를 ‘조직에 흡집을 낸 인물’로 보는 감정의 암금을 썻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 태도 불투명·분위기도 엇갈려

이같은 냉소적 반응은 특히 간부급으로 올라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는 형편이다. 한 간부는 “복직이 되더라도 감사관으로 돌아오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본인 역시 그같은 기대는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했다.

또 당시 李씨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현재 대부분 과장이상의 직급에 올라 있는 상황이라 李씨가 예전의 4급으로 복귀한다 해도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추측들이다.

李씨의 폭로사건 이후 감사원은 알게 모르게 집안속에 신경을 곤두세워 왔었다. 이전과는 달리 현재 감사결과서 복사가 절대 금지돼 있음을 이를 잘 말해준다. 원본 한부만 제외하고는 모두 폐기하는 등 철저히 ‘잠금장치’를 하

고 있으며,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원인제공자에 대해 실무진들이나 간부들은 여전히 꺼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 지난해 감사원법 개정작업과정에서 ‘내부고발자 보호규정’신설을 신중히 검토한 적이 있었던 감사원이 결국 없던 일로 둘러버린 것도 李씨사건이 불고왔던 파장을 상기한 때문이었다.

한편 李씨의 복직시기도 지금으로선 불투명한 상태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감사원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즉 감사원이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면 또 다시 얼마나 긴의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다.

감사원 법무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상고여부에 대해 아직 내부결정이 안난 상태라 현재로선 李씨의 복직이 언제나 가능할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상고만 없다면 당장 다음 달이라도 李씨의 복직은 가능한 일”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李씨는 감사원의 상고는 없을 것인 주장을 했다. 법률전문가인 현감사원장이 별승산없는 충돌을 재연하려 하지 않을 것인 말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한번 올타리밖으로 밀어낸 사람을 파면취소판결이 떨어졌다 해서 금방 내집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솔직한 말도 덧붙였다.

어쨌든 李씨의 생각은 확고했다. 비록 감사관이란 직책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다지 섭섭할 것이 없으며, 다시 일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퇴직때까지 임할 각오라는 것이다.

현재 李씨는 재가불자공동연합대표이자 전국불교운동연합공동의장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얼마전 조계종 폭력사태는 자신의 재판을 앞두고 徐義玄전총무원장의 퇴임운동에 참여, 이리저리 촉아다녔었다. 그리고 요즘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나라사랑 양심선언자모임 등과 함께 9일의 양심선언자보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준비에 여념이 없다.

“그날 공청회에서 사회를 맡아야 하는데 혹시 그전에 복직되면 곤란할듯 싶어요”

李씨는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할 만큼 복직문제에 대해서는 여유를 보였다. 그 나름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복직문제가 언제 어떤 식으로 매듭지어 질지는 앞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일이다. ■■■
黃水貞기자

이문옥 전감사관 파면취소판결 의미

지난 90년 5월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파다보유 실태를 폭로해 공무원의 비밀업수의무 위반 혐의로 파면된 이문록 전 감사원 감사관에게 27일 법원이 파면처분 취소판결을 내린 것은 지난해 9월 이씨에 대한 형사상 무죄판결에 이어 공직자의 비밀유지 의무와 국민의 알권리가 충돌했을 때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으로 풀이된다.



웃음짓는 양심 2월 오전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이 서
울고법에서 열린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 선
고공판에서 승소한 뒤 환한 웃음을 지으며 법정을 나서고 있
다. 김재훈 기자

비밀보다 알 권리 승리

외압거부 '공직자 저항권' 일부 인정

보호법과 같은 양심선언자 보호 법의 입법화운동이 더욱 활성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중인 행정정보공개법 제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진중인 행정정보공개법 제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이 사건이 감사가 외압에 의해 부당하게 중단되고 감사결과도 문ه버리게 돼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개발 때는 정확성과 공정성이 별히 점검돼야 한다"며 이씨가 기자에게 자료를 넘겨주면서, 용에 부실한 점이 있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제판부는 이에 따라 이씨에 한 파면처분은 징계권을 남용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이씨가 원전한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았다.

한편 이씨는 이날 법원의 판에 대해 “징부와 외부의 눈치 보지 않고 들판에서 살고 싶어”며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양심선
내용이 전적으로 보호받기 위
해서는 '신중하고 정확함을 기하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해
보시 않고 특지적으로 판결을 내
려운 법원의 용기에 경의를 표
다"고 밝혔다.

본석으로 부정비리를 미리 막기 위해서는 정부나 기업의 내부 성원들이 자유롭게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암시선언자 보호법 제정되는 것이 "지금하다"며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비쳤다. 김의경 기자

**조직비리告發
정당성부여**

李前감사관 파면취소 의미

기회오면 청탁대 監查 희망

이번 판결은 규제재자루 되는 것이 바탕이다.
표지정을 폭로했던 李智文 당시 갑자기 불법으로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이유를 알수

이제는 그만두고 놓으려는 듯이었다.
그러나 그의 말에 드는 그의 헌신과
그의 헌신에 대한 그의 존경은 그를
마음에 두고 놓을 수 없었다.
그는 그에게 그의 사랑을 전하고
그에게 그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부터 정 승소를 예상했던가.』
『갑사원에서 어떤 자리에
들어갔으나 도착한

이를
로하고 그 당시에
여이단·파리서·자마리 등
라고 말할수 있다.
(金正勲)

동아

중앙 94. 4. 21

社 説

위한 연대회의'는 28일 접사원이 이문숙(54) 전 감사관에 대한 법원의 복직판결에 불복해 거법원에 상고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감사원의 즉각적인 상고 포기를 촉구했다.

1) 문육서 특적관절 불복
2) 잠시원어 상고기 촉구
3) 단설선언 현대회의 성명
4) 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5) 노동자 조합 불법설 제정을

연대회의는 성명에서 “이 전 감사관에 대한 법원의 복직결여를 불복해 감사원이 상고를 제기한 것은 공직사화가 국민에게 물어보니 복무할 수 있기를 원하는 들판 국민들의 바람을 외면한 폐쇄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국민 조직보다 청렴결탁하고 정의로운 이 할 감사원이 이 전 감사관은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감사원이 대한 국민의 불신만 갖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감사들은 서울고법의 이 전 감사관에 대한 불직관결여 불복해 지난 2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은근 기자

의 비업무용 부동산과는
별로 관련이 없지만, 그에
대한 예상은 다음과 같다.
우선은 경제 상황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인정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인정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이다.

상태의
문서로서,
어과도자
않고
골개될
경우에는
내용의
부정화
으로
인해
쓸데
없는
언어를
일으키고
킬
기능성이
있으므로
언론에
증언
할 때에는
정확성과
공정성이
특별히
점검되어
야 한다.
고
지적한
유의해야
한다.

權利와 공무상 비밀

인터뷰

항소심서 무죄판결받은 이문옥 전감사관

“내부비리 제보자 보호법 제정에 온힘”

송현순 기자

지난 90년 5월 재벌의 비업무 용부동산 과다보유 실태를 폭로한 협의로 기소돼 21일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이문우(55) 전 감사관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평가를 받은 데 대해 큰 기쁨을 나타내며 내부 비리 제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 더욱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금 하는 일은.
= 현재 여야 국회의원 38명의
서명으로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법이 입법청원돼 있다. 서명과정
에서 여당의원들의 호응도 높았
으나 여기에 국민적 여론만 형
성된다면 제정이 가능할 것이라
고 본다.

- 앞으로의 계획은

-소감은.
=인사에 불만을 품은 사람의
돌출행동으로, 매도당해온 나의
행동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평
가돼 기쁘다. 용기 있는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책임을 지우고 끌내는 식으로
문제를 통합만 해왔다. 울타리만
높아며 문제를 가려운 셈이다.
경기도 선거관련 문서를 보면
한준수 전 연기군수가 제대로
보호만 봤다면 이런 일은 없었

- 지난해 터져나온 대형비리 사건을 보면 느끼 점은

비리가 밖으로 드러날 경우
지금까지는 대부분 하급자에게

95, 2, 22

이문옥 전갑사관 학소심도 무죄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오세빈 부장판사)는 21일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과다보유 실태를 폭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문목(55) 전 감사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기사 18면

비밀은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이씨가 공개한 자료는 개별기업의 경영상 비밀을 침해할 여지는 있지만 공무상 비밀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절문에서 “공무상” 332 김창석 기자

한겨레 95. 2. 22